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새로운 기술혁명으로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

토마스 드라이에

독일 뮌헨 Max Planck 연구소 법률 고문

멀티미디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저작권의 논리와 그 행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의 전통적인 형태는 줄어드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정보 시대의 개막이 갖는 중요성은 15세기 말 구텐베르크의 활자발명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 기술 혁명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모두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니다. 대량 사용이라는 현상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저작권/저작자의 권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일부 근본주의적, 비관적 비평가들을 제외한다면 이제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및 네트워크화에 사실상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저작물에 관련된 ‘독창성’ ‘저작자’ ‘권리 침해’ 등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디지털 작품이 그 특정상 기술적인 측면이 강할수록, 또 창작기계의 사용이 많을수록 작가의 개성이 나타나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 인접권 또는 고유권에 대한 주장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보호대상물이 많아질수록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디지털 및 네트워크용으로 개발되는 작품도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독자적인 작품은 점점 적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재래 형태로 되어 있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물의 권리 소유자들은 각각 혼존 법규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의 경우는 그 저작 형태에 관계 없이, 즉 책 또는 CD-ROM으로 출판되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되든 상관 없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내용물의 선정·배치가 원형과 같은지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일단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점은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어떤 종류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다. 일부

국가의 인쇄물 출판자들 이외에는, 전자물의 출판자가, 출판물 저작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더 잘 보호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D-ROM 제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인접권(Neighboring Rights)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이들이 어떤 법규하에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바가 있다. CD-ROM은 녹음의 일종인가, 또는 단순한 필름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호 대상/비보호 대상 내용물의 단순한 집합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각각 상이한 법률·소유권, 권리의 범위, 권리의 양도 가능성 등에서 – 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지나친 보호나 부족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나 CD-ROM 제작자들이 어떤 종류의 복제 행위—다운로딩, 부분적 복제, 데이터 추출 등—으로부터 보호되는가를 정확히 아는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데이터베이스 내 개별 품목에 대한 보호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한(또는 불공정한) 정보의 추출을 막기 위해 어떤 새로운 권리(EC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 초안에 제시된 것과 같은)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제 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각국이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규정을 서로 조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디지털화는 도덕적 권리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 보급의 우선 목표가 경제적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보호 대상물을 취급하는 우리의 정신 자세에 달려 있다. 우리가 신기술을 사용하는 태도와 정당한 권리를 취급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변증법적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본다. 자유가 극한 수준까지 이용되거나 남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효율성과 법적 정의라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잡한 법규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디지털 자료의 절차·침가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상업적 목표를 위해서는 여전히 ‘유명성(Big Names)’을 필요로 할 것이며, 또 지구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정통성(정통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정보시대의 개막이
갖는 중요성은 15세기 말
구텐베르크의 활자발명에
못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권
법규가 보호대상물의 새로운
생산·보급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토마스 드라이에.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보호 대상물의 저작·복제·전송이 용이해짐과 더불어 이의 축적·통합·재전송의 필요성도 가까운 장래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각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권리 소유자를 찾아내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 것이다.

한편 멀티미디어 제작자들은, 독점권(특히 법에 의한 면허)을 제한하여 사용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면 그들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용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세 그룹의 방안이 있다.

첫째, 개별적인 라이선싱은 가능한 정도만큼 유지한다. 단순한 출처 증명을 떠나 먼저 권리의 종류, 권리 소유자, 사용 조건, 사용료 등의 정보를 담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음, 공동 또는 중앙 집중식 라이선싱 방법을 채택한다. 공동 라이선싱 방법에서는 일개 그룹의 권리 소유자 및(또는) 사용자가 함께 움직인다. 궁극적으로는 저작물 자체를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게 한 후 중앙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한다.

셋째, 법에 의하여 면허를 부여하거나, 세금 부과, 또는 독점권을 정부가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을 쓴다. 법에 의한 면허는 저작자나 권리 소유자에게 독점관리 사용료 징수권을 허용치 않으므로 권리 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불리한 방법이 된다. 따

라서 주요 공익이 관련되는 곳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점권(단순한 보상 청구권만이 아닌)을 정부가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비자발적이라는 점 외에는 정부의 자발적 독점권 행사의 경우와 똑같은 한계를 갖는다.

디지털·네트워크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디오와 위성 텔레비전을 제외한다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이야말로 처음으로 보호 대상물의 진정한 국제적인 이용과 산포를 가능하게 해 준다. 보호 대상물의 이용이 한 나라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법률상의 차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용 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칠 경우에는 각국 법률의 차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일부 규정을 조정·조화시키는 일은 필요하다.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정확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이를 목적 위주로 해석하는 나라에 비해 조정 작업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권리 행사에 관한 한, 개별적 행사에서 공동 행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동관리 시스템은 여리모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당후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과업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개별 또는 공동 관리 양면에서 실수가 벌어진다면 이는 관계자들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저작자, 저작권 관련 산업 및 저작권 자체가 21세기의 정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전들을 부딪쳐 해결해야 할 것이다.